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6조(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) 및 제8조(예산배정계획 등)에 따르면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모든 부서에서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집행계획서, 예산지출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'22년 사무관리비 총 집행액 100,000천원의 73%인 73,000천원을 4분기에 집중 집행

사례2> 예산 소진을 위해 출납 마감 기한이 임박하자 복사용지,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명목으로 연도 말 집중 집행

사례3> 출납 마감 기한이 임박하자 복사용지, 행정봉투 구입 명목으로 예산을 연도 말 집중 집행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연도 말 예산을 몰아쓰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월별 집행계획 수립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